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정관

제정 1992.12.16(문화부 허가)

개정 1995.7.20(문화체육부 허가)

1999.10.18(문화관광부 허가)

2001.1.14(문화관광부 허가)

2005. 3. 22(문화관광부 허가)

2008. 1. 2(문화관광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영문 : Performing Arts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이 협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본부는 서울특별시 지부를 겸한다.

제3조(목적) 이 협회는 공연예술매니지먼트사 상호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회원 공동의 권리를 옹호하며 공연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연예술 사업에 관한 제반업무의 협의 조정
2. 국제회의 참석, 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
3. 예술관련 조사 및 연구개발
4. 공연기획
5. 문화행사대행
6. 그 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이익제공의 원칙) ①이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이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이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공연의 업무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여 2년 이상의 경력과 20회 이상의 공연실적을 가진 자로서 이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며 따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은 제 1항의 자격 중 경력과 실적 기준에 미달하나 이 협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따로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
3. 단체회원은 공연단체, 신문사, 방송국 등의 공연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단체로 이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따로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4. 특별회원은 공연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따로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

제7조(회원의 관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이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대표자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10조(징계) ①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사회로부터 2회 이상의 이행권고를 받고도 시정치 아니한 자.
2. 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자.

②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견책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이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3. 이사 13인(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삭제(2001.4.14)

③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상호간의 제 3항의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3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장)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여 이 협회의 업무전반을 통괄한다.

제15조(직무수행)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 사회의 의결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 감사는 이 협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법인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8조(구성) 총회는 이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의 개최일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가 소집하고 대표자는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법인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중요한 업무사항

제21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 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5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27조(재산) ① 이 협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 재산은 이 법인설립 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⑤ 삭제(2001.4.14)

제28조(세입 등) 이 협회의 운영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잡수익금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이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2회 이상 감사해야한다.

제30조(회계연도) 이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1조(예산편성) 이 협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임원의보수) 임원의 보수는 사업운동을 전반적으로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3조(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34조(직원) 사무국은 국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35조(사무국장등) ①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장 한국예술경영연구소(신설)

제36조(설치) 협회의 부속기관으로 예술관련 조사, 연구, 학술대회 개최 등을 위해 예술경영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37조(운영)①운영 예술경영연구소에는 소장을 포함한 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예술경영연구소 운영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38조(해산)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귀속) 이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이 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사업보고) 이 협회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제42조(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명예직 및 자문역, 후원회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정관과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시행일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